

문서분류	업무기준
운용부서	품질환경처
등록번호	QMS-0004

KOREA
HIGHWAY
CORPORATION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

2003. 8. 27 제정

2016. 10. 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업무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4.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5.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6.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②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7. “대가”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추락”이라 함은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10. “전도”라 함은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말한다.
11. “낙하·비래”라 함은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것을 말한다.
12. “붕괴·도괴”라 함은 적재물, 비계,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13. “협착”이라 함은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를 말한다.

제 2 장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

제 4 조 (대상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조에 따라 해당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통합 안전관리 계획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4장 통합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공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혹은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나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구 분	1중시설물	2중시설물
1. 도로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12미터 이상이고 연장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의 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중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중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중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1중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1중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8.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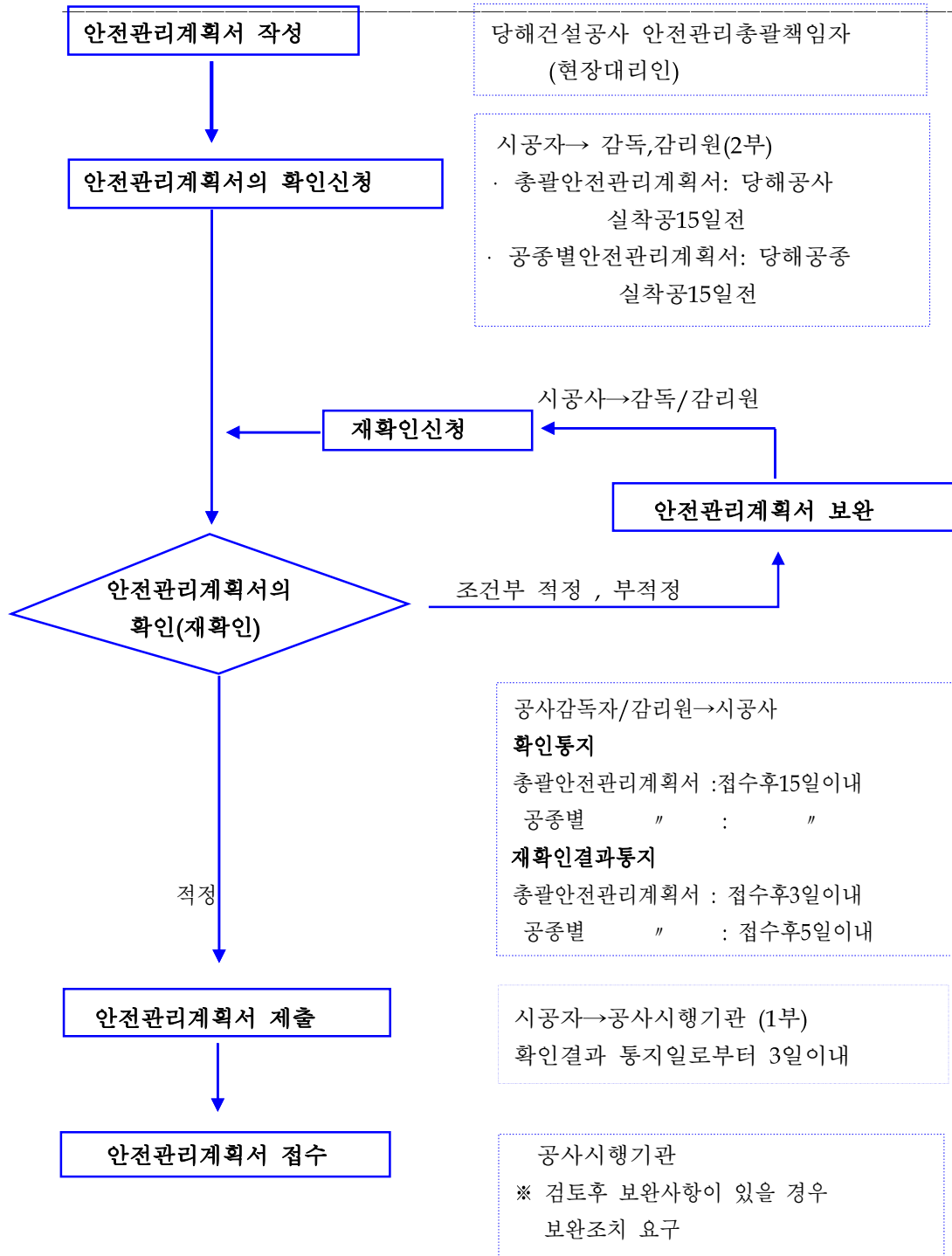
제 5 조 (작성자, 확인자, 제출시기 및 작성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9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내용은 다음표에 따른다.

항 목	세부내용
작성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확인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에게 제출 - 발주처 및 인허가기관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 계획 검토 의뢰 가능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안전관리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대책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공사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콘크리트공사 · 강구조물공사 ·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포함) · 해체공사 · 건축설비공사

제 6 조 (작성흐름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도급계약 체결 후 흐름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검토의뢰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일반

1. 안전관리계획서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로 분리 작성한다.
2. 작성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로 한다.
3. 작성 규격은 A4 크기의 용지를 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표 및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크기에 맞게 접어서 작성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중 안전관련 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 등 설계도서를 당해 공사 수급인이 작성한 경우 도서의 우측 상단에 작성일과 설계책임자 서명날인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시행규칙 제58조 별표7)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에 열거되는 내용에 따라 작성하며, 각종 서류, 도면 등의 자료들 중 발주자, 인·허가, 승인기관 등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공사개요

공사전반의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서·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2.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점검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③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시행규칙 제58조 별표7) 82. '97.7.21이후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에 열거되는 내용에 따라 작성하며, 각종 서류, 도면 등의 자료들 중 발주자, 인·허가, 승인기관 등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가. 가설비계 설치개요서,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2. 굴착 및 발파공사

가. 굴착·흙막이·발파·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에 관한 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가.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4.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5. 성토 및 절토공사 (흙댐공사 포함)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계산서

6.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7.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제 3 장 통합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3. 통합계획서 수립 ('03.6 이후)

제 8 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이하 "양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통합계획서만을 제출토록 하여 양 계획서 작성에 따른 불편함과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 안전관리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 (작성대상)

통합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양 계획서의 제출대상에 동시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공사에 모두 해당되어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양 계획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0조 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혹은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나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 10 조 (관계법령 및 기준)

3. 통합계획서 수립 ('03.6 이후)

통합계획서에 대한 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계법령

관계 법령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①,③,④,⑤항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 ④,⑤,⑥항 제121조[제출서류등] : ①,②,③항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 ①,②,③항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 ①,②,③,④,⑤항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 ①,②항 제124조[확인] : ①,②,③,④,⑤항 제124조의2[보고등]

안전관리계획서 관계법령

관계 법령	관련 조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②,③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①,②,③,④⑤⑥항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①,②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 11 조 (통합계획서 작성)

① 통합계획서는 기본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통계획으로 구성한다

1. 기본사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기본사항이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유해·위험요인별 재해방지계획으로 구분된다.

3. 안전관리계획은 기본사항이외에 안전관리계획서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은 통합계획서와 공사현장 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4. 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통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계획 및 서류,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중복을 방지한다.
- ② 통합계획서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통합계획서의 작성 규격은 A4 용지 중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표 및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한다.
- ④ 통합계획서의 내용 중 구조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 등을 당해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서에 작성일과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한다.
- ⑤ 통합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지침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관련 있는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 ⑥ 「안전관리계획 중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통합계획서와 분리하여 공종별로 별도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공전 제출이 가능하다. 단 「공통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검토되어야 하므로 통합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통합계획서의 구성)

<p>1장 기본사항</p> <p>(1) 공사개요</p> <p>(2) 안전관리조직</p> <p>(3) 안전교육계획</p> <p>(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p> <p>2장 유해·위험방지계획</p> <p>1. 안전보건관리계획</p> <p>(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p> <p>(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p> <p>2. 유해·위험요인별 재해방지계획</p> <p>(1) 추락방지계획</p> <p>(2) 낙하·비래 예방 계획</p> <p>(3) 붕괴방지계획</p> <p>(4)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p> <p>(5) 감전재해 예방계획</p> <p>(6)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p> <p>(7)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p> <p>(8)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 계획</p>	<p>3장 안전관리계획</p> <p>1.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p> <p>(1) 안전관리비 집행계획</p> <p>(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p> <p>(3)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계획</p> <p>(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p> <p>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p> <p>(1) 가설공사</p> <p>(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p> <p>(3) 콘크리트공사</p> <p>(4) 강구조물공사</p> <p>(5) 성토 및 절토공사</p> <p>(6) 해체공사</p> <p>(7) 건축설비공사</p> <p>4장 유해·위험방지와 안전관리 공통계획</p> <p>(1)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p> <p>(2) 가설비계 안전관리계획</p> <p>(3)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안전관리계획</p> <p>(4) 발파공사 안전관리계획</p>
--	--

제 13 조 (통합계획서의 제출)

시공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이하 "안전공단" 이라 한다)에 2부를 제출한다.
 - 가.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나.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2.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안전공단에 제출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

1. 시공자는 통합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확인신청) 기간은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로 한다.

제 14조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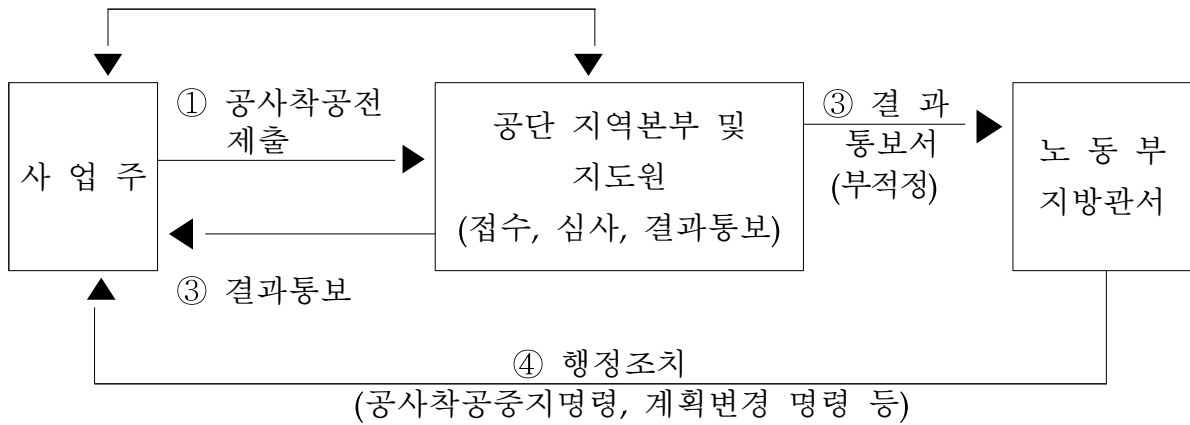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 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나.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다.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해당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 6개월 마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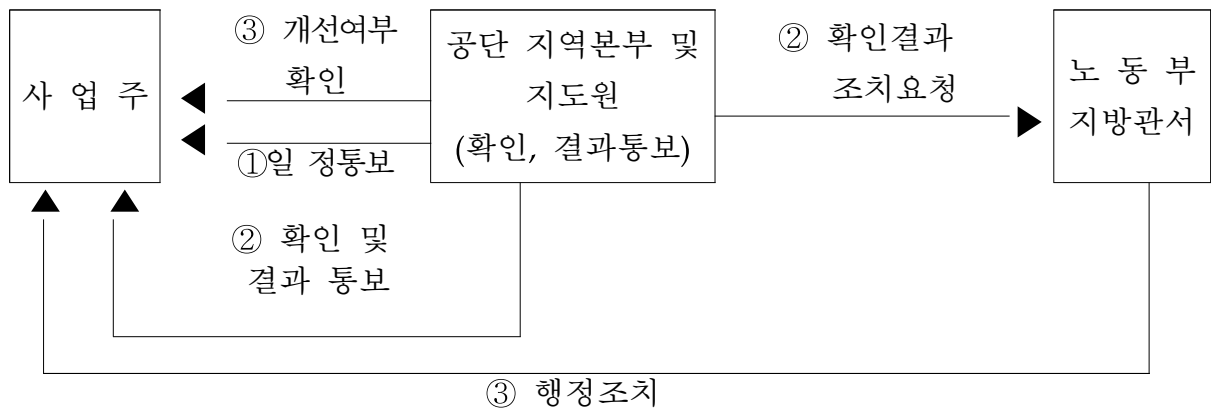
4. 심사 및 확인검사 절차

3. 통합계획서 수립 ('03.6 이후)

가. 심사



나. 확인검사



② 안전관리계획서

1.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한 경우 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다. 부적정 :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인정될 때

3.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 개선계획반드시 (보완 요건)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4. 확인결과 통지 기한
 - 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5. 확인결과 통지 내용
 - 가.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 나.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
 - 다.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완하여야 할 사항
6.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 가.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 나.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7.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8.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 4 장 통합 계획서 작성기준³⁾ 통합계획서 수립 ('03.6 이후)

제 15조 (통합계획서 작성)

통합계획서 작성방법과 기준의 세부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 작성 지침서(국토교통부, 노동부 2014)에 따른다.

제 5 장 안전점검 기준

제 16 조 (근거자료)

- ① 건설기술진흥법 : 2016. 8. 12 개정
- ②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2016. 9. 30 개정
- ③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2016. 8. 12 개정
-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 2014. 5. 23 개정
- 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 2012. 8. 20
-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 2014(국토교통부)

제 17 조 (대상,실시시기 및 횟수)

- ① 자체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제1항 의해 건설업자가 직접 공사 기간동안 매일 실시
- ② 정기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 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퇴매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 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③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하 결함)이 수발견(이하 수발견)되어 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초기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해 시특별 제2조에 의한 1·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⑤ 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 발주자가 판단하여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며, 공사재개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안전점검기관 선정 및 자격)

- 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자격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제5항에 의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기관 선정방법
 1.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점검항목 및 결과처리)

- ① 자체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처리
 1. 주요 공종별 자체안전점검 항목을 작성하여 당해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양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2. 점검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 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 ② 정기안전점검 항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의해 점검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항에 따른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③ 정기안전점검(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 안전점검 일부포함)의 ~~결과~~ **종합계획서** 수립 ('03.6 이후)
1. 점검결과 통보 의무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인가·허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는 건설업자에게 보수·보강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점검지적사항 처리 : 통합작성 지침서(국토교통부, 2014년 5월)에서는 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확인하고 그 기록을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현황(안전관리 업무매뉴얼 국토교통부 2014) 별지 제1호 서식에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준공시 종합보고서 처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준공시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시특법 제2조에 의한 1·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종합보고서 보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의해 발주자와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종합보고서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타)

안전점검 기준의 세부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14.12)에 따른다.

제 6 장 안전관리비 집행기준

제 21 조 (안전관리비 집행)

- ① 안전관리비 계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②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비 항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아래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3. 통합계획서 수립 (03.6 이후) 산 출 기 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함
영 제100조의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
공사장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	관련분야 설계기준
계측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 ④ 안전관리비 정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4항에 의해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 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조의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적용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35호)을 적용함.

제 22 조 (기타)

안전관리비 집행기준의 세부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 5. 23)에 따른다.

제 7장 건설현장 안전사고보고 및 수습체계

제 23 조 (재난관리 체계)

재난관리 체계 및 임무 등 세부내용은 「고속도로 재난관리 매뉴얼(2016.8)」에 따른다

부 칙

이 업무기준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 개요				
명 칭 (상 호)		금 액 내 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2) 관급자재비	
공 사 명			(3) 노 무 비	
현 장 명			(4) 부대시설비	
발 주 자			계	
공 사 기 간			안 전 관 리 비	
공사의 종류	1. 1중시설물 2. 2중시설물 3. 10m 이상 굴착공사 4.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기타 건설공사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5. 기타				
총 계				

○ 세부사용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1) 3. 통합계획서 수립 ('03.6 이후)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진동·소음·분진 등의 환경측정 비용					
기계·기구의 완성검사 비용					
기계·기구의 정기검사 비용					
기타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지하매설물 보호					
인접구조물 보호					
민원대책 비용					
기타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통행 안전시설 설치					
통행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기타					